가족사항 등록

항목				도움말
기본공제		본인기본공제	ᅦ (자동계산)	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(연 150만원)
	배우자공제			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)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(연 150만원) *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합니다.
		직계 존속		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(1963.12.31 이전 출생) *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(사실혼은 제외)
	부 양 가 족 공 제	직계비속	자녀 및 손자녀·입양자	•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 (2003.1.1 이후 출생) - 거주자의 직계비속 -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(사실혼 제외) 중에 출산한 자 *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
			그 외 직계비속	■ 자녀 및 손자녀, 입양자가 아닌 직계비속 -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등 *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
		형제자매		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(2003.1.1 이후 출생) 또는 60세 이상(1963.12.31 이전 출생)인 사람 *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		수급자	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
		위탁아동		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*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
추 가 공 제	경로우대공제		대공제	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(1953.12.31 이전 출생)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
	장애 인 공제			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※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*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학업·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<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>
	부녀자공제		다공제	근로자 본인이 여성(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)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 50만원 공제 가능 - 배우자가 있는 여성 (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) -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
	한부모공제		고공제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가능 *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: 한부모공제 적용
자녀 세액 공제	자녀 세액 공제		액 공제	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)의 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(*공제대상자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)로서 8세 이상 - 1명 : 연 15만원, 2명 : 연 30만원, 3명 이상인 경우 :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
	출생·입양 자녀 세액 공제		녀 세액 공제	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※ 첫째 출생. 입양 시 : 30만원 - 둘째 출생. 입양 시 : 50만원 - 셋째 이상 출생. 입양 시 : 70만원 (셋째이상 되는 자녀수 * 70만원)